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문대림 · 윤준병 · 이원택
이건태 · 강준현 · 김한규
주철현 · 진성준 · 문금주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의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 가격 안정

을 위하여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거래 가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유통시설”이란 축산물 유통산업에서 활용되는 기계·장치·장소 등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물 유통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축산물을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산지유통인

나. 그 밖에 축산물 유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축산업 경영자”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의 관리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축산물의 유통과 가격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를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2. 축산물 소비실태
3. 축산물 경매정보
4.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5.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등 관련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도축·출하·재고 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업무를 효

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급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여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사업
2.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3.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 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축산물 유통 또는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절차와 방법,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이하 “계약생산등”이라 한다)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생산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의 표준화,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등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축산

물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생산 등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인력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와 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육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직무훈련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3.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① 축산물 유통(조사·연구·정보화를 포

함한다)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정보화 사업
 2. 제10조에 따른 축산물 유통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종합정보 시스템·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운영
 3. 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현대화 지원
 4.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 및 계약생산·계약출하 관련 분쟁예방·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5. 축산물 수급관측 지원, 가격동향 분석 및 공표 지원
 6. 축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 관리를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7. 축산물의 수출입 지원 및 관련 국제협력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아니하거나 표준계약

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

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다.